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교육부장관 면담자료

2017. 9. 27.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목 차

1

## 1 인사·제도 분야 ..... 1

- ① 학교조직(행정실 등) 법제화
- ②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개정(교원 → 교직원)
- ③ 직종개편 후속대책 마련

2

## 2 수당 분야 ..... 4

- ① 특수직무수당 개정(신설)
- ②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3

## 3 노사 상생·협력 분야 ..... 6

- ① 교육청노조와 「노사협의회 정례화」 추진
- ②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교육부 주관)

# 인사·제도 분야

1

## 학교조직(행정실 등) 법제화

가

### 현황

대학교와 달리 초·중등학교는 학교조직(행정실 등)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아 학교장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하면서 교원과 갈등을 초래하여 업무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나

### 추진 경과

- 19대(유은혜의원)에이어 20대(유은혜·송기석의원)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現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반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조차 못하고 있음

다

### 건의 사항

- 교육부가 (국회) 학교조직(행정실 등) 설치를 법제화하여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라

### 참고 사항

- 2012년 9월 27일(수) 이주호 장관과 노사협의회 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못지 않게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조에서 요청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가

현황

교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교원위원으로 당선되면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교원위원 선거만을 위한 형식적인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나

추진 경과

- 교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2016년 8월 24일)
- 現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

## 다

건의 사항

- 교육부 (국회)가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가 현황**

-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의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내에 유사업무가 없는 직군(렬) 신설하여 전직 시행  
※ 시설관리, 조리, 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등

**나 문제점**

- 전직시험 기간종료(2016. 12. 31)이후 정원축소 및 상위직급 미확보로 인한 장기재직 관리운영직군의 일반 승진이 제한되고 대다수가 7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다 개선사항**

- 노사 공동으로 T/F 구성

# 수당 분야

1

## 특수직무수당 개정(신설)

가

### 현황

교원과 지방자체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각종 수당관련 형평성 문제로 사기 저하

나

### 추진 경과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직무수당 신설 입법예고 (2016. 12. 26)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하여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자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2016년 12월 26일)
  - 특수직무수당 신설은 국가직(국립학교 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 제출(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 ※ 국립직원 수 : **54명**, (유치원 3교(2명), 초등 17교(32명), 중학교 9교(20명))
    - ※ 공립직원 수 : **34,574명** (유치원 4,693교(890명), 초등 5,909교(24,519명), 중학교 2,560교(9,165명))
  - 국무회의 상정 안건에서 특수직무수당 신설 삭제(2017년 1월 3일)

다

### 건의 사항

- 교육행정기관(공립 유·초·중·고·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가칭“교육행정활동비”)** 신설

<신구조문 대조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현행	개정(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가.~아.(생략)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자.(가칭“교육행정활동비” 조항신설) 1) 5급이하 지방공무원 : 월 <b>70,000원</b> 지방교육행정기관(유·초·중·고 및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

## 2

##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 가

## 현황

병설유치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경우 감사책임과 실질적인 업무를 겸임해 왔음에도 법률적 근거 미비로 “겸임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교육공무원 임용령」 겸임근거로(교장 월10만원, 교감 월5만원) 겸임수당 지급 중

## 나

## 추진 경과

-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2016년 12월 28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행정직, 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적, 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함을 예시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겸임) 제2항제4호(2016년 12월 30일) 신설하여 병설유치원 겸임수당근거 마련

## &lt;지방공무원임용령 신구조문 대조표&gt;

구조문	신조문
제7조의5(겸임)① ----- ...	제7조의5(겸임)① ----- ...
②제1항에따른겸임은본직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할수있다.다만,제3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겸임하는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여야한다.	② ----- -----.-----하며, 제4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겸임하는경우는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 다

## 건의 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수당지급 근거마련에 따라 병설유치원 근무 지방공무원에 겸임업무수당 지급(월5만원)

# 노사 상생·협력 분야

1

## 교육청노조와 「노사협의 정례화」 추진

가

### 목 적

교육부와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정례화”를 통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부 소속 지방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개선하고자 함.

나

### 건의 사항

- 교육부와 교육청노조 간에 「노사협의 정례화」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년 2회)

2

##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가

### 목 적

교육부가 주관하는 “노사합동 워크숍”을 통해 노사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나

### 건의 사항

- 노사 상생과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부 주관 「노사합동 워크숍」을 년1회 개최